**「제73장 무유언 유산 조례 제1조-제3조」**

[법률, 2006.2.11., 개정]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1. 簡稱  本條例可引稱為《無遺囑者遺產條例》。  2. 釋義  (1)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丈夫” (husband)及”妻子” (wife)就一個人而言，指該人在有效婚姻中的丈夫或妻子；  “非土地實產” (personal chattels)指 ——  (a) 無遺囑者去世時在其尚存丈夫或妻子的任何居所的下列東西，即家具、衣服、裝飾品、屬家庭、個人、康樂或裝飾用途的物品、各類消費品、園藝物品及家畜；及  (b) 汽車及附件，但不包括專用於或主要用於業務或專業方面的實產，或金錢或貸款抵押物；    (由1995年第57號第2條代替)  “法院” (court)指原訟法庭；  (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剩餘遺產” (residuary estate)指無遺囑而去世者的遺產中每項實益權益，但扣除從中適當支付的喪葬費、遺產管理費、債項及其他法律責任，而該等權益是該無遺囑而去世者如屆成年並具行為能力時即可憑遺囑(而非憑藉指定受益的權力)處置的權益；  (由1995年第57號第12條修訂)  “無遺囑者” (intestate)包括留有遺囑但對其遺產中若干實益權益未有立下遺囑而去世的人；    (由1995年第57號第12條修訂)  [比照 1925 c. 23 s. 55(1) U.K.]  “遺產” (estate)指不動產業及可動產業。  (2) 為施行本條例，任何人如 ——  (由2004年第28號第35條修訂)  (a) 根據《領養條例》(第290章)作出的領養令受領養；  (b) 受領養而該條例第17或20F條適用於該領養；或    (由2004年第28號第35條修訂)  (c) 在1973年1月1日前按照中國法律及習俗在香港受領養，則除第(2A)款另有規定外，該人即須被視作領養人的子女，而非任何其他人的子女，而與該受領養人的所有關係須據此推演。    (由1995年第57號第2條代替。由2004年第28號第35條修訂)  (2A) 為施行本條例，任何人如根據在《領養條例》(第290章)第5(1)條(c)段下作出的領養令而受領養，該人即須被視作領養人與該段所提述的父或母的子女，而非任何其他人的子女，而與該受領養人的所有關係須據此推演。  (由2004年第28號第35條增補)  (3) 在本條例內，凡提及任何人去世時仍活着的子女或後嗣時，均包括於該人去世時尚屬腹中胎兒的子女或後嗣。  [比照 1925 c. 23 s. 55(2) U.K.]  (4) ( - )  (由1995年第57號第2條廢除)  3. 有效婚姻就本條例而言，“有效婚姻” (valid marriage)指 ——  (a) 按照《婚姻條例》(第181章)條文而舉行婚禮或締結的婚姻；  (b) 藉《婚姻制度改革條例》(第178章)認可的新式婚姻；  (c) 藉《婚姻制度改革條例》(第178章)宣布為有效的舊式婚姻；  (d) 在香港以外地方，按照當時當地施行的法律舉行婚禮或締結的婚姻。  3A. 關於非婚生地位人士的推定  (1) 為施行本條例，非婚生地位人士被推定在其去世時其父親並不尚存，而透過其父親與其有親屬關係的人亦並不尚存，除非相反證明成立。    [比照 1987 c. 42 s. 18(2) U.K.]  (2) 第(1)款的推定不適用於以下的人 ——  (a) 屬《婚生地位條例》(第184章)第2條所指獲確立婚生地位人士的人；  (b) 根據《婚生地位條例》(第184章)被當作為或被視為具婚生地位的人；  (c) 根據以下各項的受領養人 ——  (i) 根據《領養條例》(第290章)作出的領養令；  (ii) 香港法律承認為有效的領養；  (d) 在其他方面根據法律被視為具婚生地位的人。  [比照 1987 c. 42 s. 1(4) U.K.]  (由1993年第17號第19條增補) | 1. 약칭  이 조례는《무유언 유산 조례》라고 칭한다。  2. 해석  (1) 이 조례 가운데 별도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남편” (husband) 및 ”아내” (wife)란 1명이며, 해당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이다.  “비(非)토지 실제생산량” (personal chattels)이란 ——  (a) 무유언자가 사망하는 때에 생존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모든 거주지에 있는 아래의 물품: 가구·의복·장식품·생활품·개인용품·오락 또는 장식용 물품·각종 소비품·예술품·가축  (b) 자동차 및 부속품: 다만실사용 목적이 업무용 또는 전문가용이거나 금전 및 대출 저당으로 빌린 물품은 제외  (1995년제57호제2조 대체)  “법원” (court)이란 제1심 법원을 가리킨다.  (1998년제25호제2조에 따라 개정)  “잔여 재산” (residuary estate)이란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유산 중 모든 실제적 권익을 가리킨다. 다만, 적당한 수준에서 지출하는 장례비용·유산관리비·부채·법적책임을 공제하고,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권익을 받는 자는 (지정 수익 권한이 없는 경우) 성년이 되어 행위능력을 갖추는 때에 유언에 따라 권익을 처리할 수 있다.  (1995년제57호제12조 개정)  “무유언자” (intestate)란 유언을 남겼으나 그 유산과 관련한 권익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  (1995년제57호제12조에 따라 개정)  [1925 c. 23 s. 55(1) U.K.와 비교 대조]  “유산” (estate)이란 부동산및 동산을 가리킨다.  (2)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누구든지 ——  (2004년제28호제35조 개정)  (a) 《입양 조례》(제290장)에 근거한 입양령에 따르는 입양  (b) 입양된 뒤에 제17조 또는 제20F조를 적용하는 입양  (2004년제28호제35조에 따라 개정)  (c) 제(2A)관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중국 법률 및 관습에 따라 홍콩에 입양되어, 입양자의 자녀로 간주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입양된 자와의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추론하도록 이루어진 입양  (1995년제57호제2조를 대체. 2004년제28호제35조에 근거하여 개정)  (2A)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입양 조례》(제290장) 제5(1)조(3)단에 따르는 입양령에 근거하여 입양된 자가 각 단이 서술하는데로 부 또는 모인 입양자의 자녀이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며, 입양된 자와의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추론하도록 이루어진 입양  (2004년제28호제35조 증보)  (3) 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어떤 사람이든지 사망하는 때에 생존하는 자녀 또는 후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망자가 사망하는 때에 복중에 있던 태아 또는 후사도 동등하게 포함한다.  [1925 c. 23 s. 55(2) U.K.와 비교 대조]  (4) ( - )  (1995년제57호제2조에 따라 폐지)  3.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효한 혼인”이란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 《혼인 조례》(제181장)에 따라 혼례를 거행하거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경우  (b) 《혼인제도 개혁 조례》(제178장)가 인정하는 신식 혼인인 경우  (c) 《혼인제도 개혁 조례》(제178장)에 따라 구식 혼인의 유효성을 선포하는 경우  (d)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당시 현지에서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 혼례를 거행하거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경우  3A. 혼인 관계로 생성되는 관계가 아닌 자에 관한 추정  (1)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혼인 관계로 생성되는 관계가 아닌 자가 사망하는 때에 그의 아버지가 생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아버지와 가족 관계에 있는 자도 생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명이 상반되지 아니하여야만 관계가 성립한다.  [1987 c. 42 s. 18(2) U.K.와 비교 대조]  (2) 제(1)관 추정을 아래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혼인으로 생성된 지위에 관한 조례》(제184장)제2조가 혼인으로 생성된 지위를 가진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자；  (b) 《혼인으로 생성된 지위에 관한 조례》(제184장)가 혼인으로 생성된 지위를 가지기에 합당하다고 규정하거나 해당 지위를 갖추었다고 간주하는 자；  (c) 아래의 각 항에 따라 부양을 받는 자 ——  (i) 《부양 조례》(제290장)에 따른 부양 명령  (ii) 홍콩 법률이 승인하여 유효한 부양  (d) 그 밖의 방면에서 법률에 따라 혼인으로 생성된 지위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자  [1987 c. 42 s. 1(4) U.K.와 비교 대조]  (1993년제17호제19조 증보) |